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20190162

최초등록일 : 2019.02.19.

최종등록일 : 2025.02.14.

MILC Learning(밀크러닝)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리딩타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리딩타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8층 811호(구로동 지하이시티)

[전화번호] 02-867-3320 [팩스번호] 02-867-665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리딩타운가맹팀 / 02-867-33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식회사리딩타운			
사용 브랜드	주 소			
MILC Learning(밀크러닝) 외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8층 811호(구로동 지하이시티)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1.07.30.	2001.08.07.	송순호	02-867-3320	02-867-6651
법인등록번호	110111-2298267	사업자등록번호	105-86-2906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8층 811호(구로동 지하이시티)		
사용인 (임원)	송순호	MILC Learning(밀크 러닝) 외1	송순호	02-867-3320	02-867-665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계열회사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리딩월드	리딩타운어학원	2023.03.3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8층 811호(구로동 지하이시티)	송순호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MILC Learning(밀크러닝)	
상 호	MILC Learning(밀크러닝) 홈/센터/허브	
상표 (서비스표)		출원(국제등록)번호 : 4020180179500 출원(국제등록)일자 : 2018.12.20
광고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54,453	126,824	827,629	185,424	40,705	24,895
2022년	967,843	125,674	842,169	117,873	19,473	-1,149
2023년	1,001,137	115,905	885,232	351,143	7,350	-9,769

그 근거자료는 [별첨1 전년도 재무제표(손익계약서/대차대조표)]에 첨부합니다.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업체/담당 업무
관련임원	송순호	대표이사	2007.11~현재	대표이사	(주)리딩타운 대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가맹본부	(주)리딩타운	가맹사업 경영	2002.12.~현재	리딩타운어학원(등록번호: 20080100408)이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	---------	---------	-------------	--

-당사는 리딩타운어학원 가맹사업을 (주)리딩월드로부터 2023.03.31.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유자	등록만료일
 (상표/서비스표)	가맹점 운영	4015747110000 2020.02.13	(주)리딩타운	2030.02.1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상표권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상표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2	2	-	2	2	-
경기	5	5	-	3	3	-	3	3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2	2	-	2	2	-	2	2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2	2	-	2	2	-	1	1	-

*해외: 태국차앙마이 점을 2018.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점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9	3				12
2022	12	1		3		10
2023	10	1		1		10

* 태국 치앙마이에 가맹점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관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직영점 수(개)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가맹본부	(주)리딩타운	교육	리딩타운어학원	20080100408	12/-	8/-	7/-
------	---------	----	---------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평당 평균	상한	평당 상한	하한	평당 하한	
전체	10	10,581	549	47,658	5,242	2,899	128	10
서울	1							5 곳미만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1							-
울산	-							-
세종	2							5곳미만
경기	3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5곳미만
전남	2							-
경북	-							-

경남	-							5곳미만
제주	1							5곳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POS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리딩타운어학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1,36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사[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당사의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비 내역은 해당 가맹사업에 지출된 금액으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관계로 총액을 기재합니다. 실제 가맹사업을 위한 광고비 지출은 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판촉	광고/판촉	2023년간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가맹금예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후에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보험사	
보험계약자	株式會社 리딩타운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초도 상품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5,500 ~ 22,000]		
영업표지 사용대가	25 %	계약체결과 동시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 1. 甲이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乙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2. 甲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乙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Know-how 최초교육 제공대가	25 %	계약체결과 동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개설지원 대가 (교육설명회, 홍보물 등 포함)	50 %	계약체결과 동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 상기의 가맹금은 상권과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통상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홈	5,500	센터	11,000	허브	22,000
---	-------	----	--------	----	--------

2)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해당없음			

계약이행 보증금				
-------------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5,500 ~ 22,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500 ~ 22,000]
최초 가맹비	55,000 ~ 22,0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 예치가맹금은 상권과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상기의 「1) 최초 가맹금」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0m²)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19,900			
인테리어/설비	자체 시공	3.3m ² 당 약 1,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비/집기	자체 시공			해당없음	
외부(간판 등)	자체 시공			해당없음	
최초 상품 비용	가맹본부	9,900			

[인테리어/설비, 간판 등은 회사의 CI, BI 기준에 맞추어 귀하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선정의 문의처 : 당사의 운영지원팀, 표지에 표기된 전화번호 참조]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의 광고분담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온라인사용료	가맹본부	학생 1인당 28(천원)	익월 20일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온라인학습이용료 사용인원당 할인비율 31명 이상 10%, 51명 이상 20%, 71명 이상 30%, 101명 이상 40%
로열티	가맹본부	수강료의 5%	익월 20일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상적으로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시 반환 안됨	판매 촉진 및 광고의 방법, 시기, 횟수 등은 “총원장회의”를 거쳐 거나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최종결정권은

						甲에게 있다. 乙은 “총원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해당 없음	-	-	-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 실시 7일 전 (해외 교육은 5주 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교재 등 상품공급비	가맹본부	-	공급전 선불	미공급 하자공급	1개월 후 반환안됨	
점포환경개 선 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청구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지연 이자	가맹 본부	연 18%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사전통지를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

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운영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운영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계약은 매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추가 라이선스 비용은 홈/센터/어학원 기준으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으로 합니다. 단, 전년도 년의 월평균 사용료가 갱신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갱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평균사용료와 갱신금액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받는 양수인이 당사에 교육비(지원비)[최초가맹금의 50%]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잔여계약기간이 아닌 신규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영업양도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제 7 조 [계약의 종료 및 원상복구]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가맹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운영프로그램 및 교재나 학원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의 비용은 이 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甲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乙이 부담한다.

③ 乙이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평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乙은 『MILC Learning(밀크러닝)』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학원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개설품목 LIST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급상품 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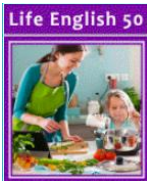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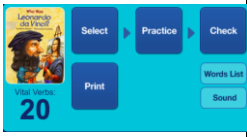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상품 LIST>

NO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1	Speaking Program			강제 (아래와 같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1회 위반시 서면으로 시 정요구와 동 시에 상품공 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Speaking Program			

2	Reading Program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Speaking Program			
3	기타 프로그램	MILC Learning(밀크러닝)과 관련된 Speaking, Reading Program 에 준하는 학원운영과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일체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위반시 책임
<가맹계약서> 제 21 조 [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① 乙은 교재, 학원운영시스템과 Know-how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결정, 신입생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 MILC Learning(밀크러닝)의 이미지 및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甲의 지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타사의 교재, 학원운영시스템과 Know-how 및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없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

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객(학생이나 학부모) 이외의 다른 가맹점이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상기의 <판매상품 LIST> 참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자재 및 시스템을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수 없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1회 위반시 서면으로 시정요구와 동시에 상품공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상기 <판매상품 LIST> 참조	홈페이지 또는 별도 제공	홈페이지 사전 통지	

[제한내용]

가격 제한

<가맹계약서>

제 20 조 [교재공급 및 운영관리]

⑤ 甲은 乙의 영업지역의 경제여건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乙은 결정된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甲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구별 없이 어느 한쪽이라도 포함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 및 영어 On - Line 사업	MILC Learning(밀크러닝)	리딩타운어학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동단위 이내 혹은 아파트1개동 단위 / 행정구역 1개동 단위,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1개/ 행정구역 구 단위]범위로 하여 1개점을 乙에 의하여 선택된 영업지역을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
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
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입니다. 재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사유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②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甲은 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甲은 乙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乙이 본 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乙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乙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의 상품이나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기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乙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乙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5조[계약기간]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乙이 제8조[가맹비 및 온라인사용료]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 乙이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乙이 제12조[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甲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5. 乙이 제17조[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 乙이 제20조[교재공급 및 운영관리]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7. 乙이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8. 乙에게 제23조[상품공급 및 경영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9. 乙이 제27조[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영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0.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1.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23 조 [상품공급 및 경영지원의 중단]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乙에 대한 교재 및 학원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및 경영지도, 프로그램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乙이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 등의 대금지급 및 온라인사용료지급을 연체한 경우
2. 乙이 甲의 경영지도나 지침을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乙의 채무액이 甲이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4. 乙이 甲과 협의 없이 학원관리 업무를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乙이 甲과 협의한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乙이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6 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가맹계약서> 제 33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甲, 乙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
<가맹계약서> 제 17 조 [영업양도 등] ①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 학원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다.

- ② 乙은 학원 또는 영업을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甲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사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甲은 乙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甲이 위 1개월 이내에 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乙의 처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적법하게 乙의 학원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제3자(이하 영업양수인이라 한다)는 乙의 甲에 대한 모든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단, 乙의 영업양수인은 甲에게 [홈/센터/허브]기준으로 50만원/100만원/150만원을 양도 양수시 지급한다.
- ⑤ 甲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乙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乙이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乙은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가맹금의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한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상속

<가맹계약서> 제 18 조 [영업의 상속]

① 乙의 상속인은 乙의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의 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및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甲은 乙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점포운영을 대표할 자를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乙의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乙의 영업상속인에 대해서는 乙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기간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구별 없이 어느 한쪽이라도 포함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 및 영어 On - Line 사업	

경업금지

<가맹계약서> 제 27 조 [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③ 乙은 MILC Learning(밀크러닝)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계약기간의 후 3년 이내에 다른 형태의 학원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乙은 이 계약기간 중에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甲의 영업과 동종의营업을 하지 못한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3:00 ~ 22:00 (9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문의: 당사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학원)의 직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직원수	직접근무여부
학원 경영환경에 따라 다름	해당사항 없음

직원(강사)관리

<가맹계약서> 제 15 조 [강사 및 직원]

- ① 乙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내·외국인 강사, 기타 일반직원)의 책임과 권한은 乙에게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乙은 모든 직원의 고용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 외국인관리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③ 甲은 TTP(Teacher Training Program)과정이나 강사의 면담 결과에 의하여 강사의 수준과 인품 등이 甲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乙에게 강사로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고
1. 상권분석 및 학원인가 가능여부	
2. 인테리어 CI 매뉴얼에 따른 통일된 설계시공 유무	
3. 본사 제공 교재, 부교재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유무	
4. 본사 제공 Curri.에 따르고 있는 지 유무	
5. 본사 제공 On-Line Site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유무	
6. 학생수 및 수업료	

[상기의 체크항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점포의 운영을 체크하기 이전에 변경된 LIST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는 당사의 담당팀은 운영지원팀입니다.]

[그 밖에 귀하에게 영업장 관리 · 감독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가맹계약서> 제 12 조 [감독권 및 시정 요구권]

① 甲은 乙의 학원의 운영 상태나 교육상태를 파악하고 운영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도담당자(supervisor)를 파견하여 운영상태 및 교육상태 전반에 대해 운영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乙은 甲의 운영지도담당자(supervisor)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甲은 乙의 가맹점에 대한 운영지도 결과를 즉시 乙에게 통보해야 하며, 결과를 통보 받은 乙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甲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점검사항에는 위생상태, 각종 설비관리, 교재 및 교육관련 자료나 문서관리, 서비스 실태, 강사운영관리 기타 학원의 원활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③ 제3항의 경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직접 교체 및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교체 및 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의 학원을 점검하기 이전에 미리 관리기준을 정하여 乙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甲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분담내역>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분담금 (전국광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총액의 70% 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부담	-“총원장회의”를 거치거나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함	전국광고 (TV,라디오,5대 일 간지 등)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총액의 50% 를 가맹점사업자측이	-甲은 분담액의 산출근 거와 내역과 정산서를 공	

	가맹점모 집 광고		배분하여 분담	개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분담금 (지역광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측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 보물 등의 디 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 용 등은 당사 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 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 품.팸플렛.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 담	-“총원장회의”를 거치거 나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함 -甲은 분담액의 산출근 거와 내역과 정산서를 공 개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의 경품 제공, 이벤트

구분	전국 및 지역광고/관측
<가맹계약서>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① 甲은 가맹사업 전체의 증진을 위하여 TV(CATV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기타 매체를 통한 판매 촉진 및 광고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甲은 전국적인 판매 촉진 및 광고 활동을 주관할 경우, 그 비용은 甲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甲과 乙이 분담한다. (기본적인 분담액은 [브랜드 및 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甲의 분담금 : 전체 가맹사업자의 분담금 총액 = 3 : 7], [브랜드 및 상품과 동시에 가맹점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甲의 분담금 : 전체 가맹사업자의 분담금 총액 = 5 : 5], [가맹점모집광고의 경우 甲이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u>판매 촉진 및 광고의 방법, 시기, 횟수 등은 “총원장회의”를 거치거나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최종결정권은 甲에게 있다. 乙은 “총원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u> ③ 전항의 경우 甲은 분담액의 산출근거와 내역과 정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乙은 그 분담의 지급전에 분담액의 산출근거와 내역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광고/판촉활동
<가맹계약서>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④ 甲은 乙의 영업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 활동 및 광고”를 지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 수 있다. ⑤ 乙이 전항의 “가맹점별 개별 판촉 활동 및 광고”를 할 경우, 그 행사 전에 광고 및 홍보 문안이나 내용에 관하여 갑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甲의 승인 없이 판촉 활동 및 광고집행의 결과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있다. ⑥ 乙은 영업지역 내에서 회원확대를 위한 판촉 활동 및 광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 제 27 조 [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① 乙은 계약과정 및 학원의 경영상 알게 된 甲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의 전 . 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乙은 甲이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乙은 MILC Learning(밀크러닝)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계약기간의 후 3년 이내에 다른 형태의 학원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조항
③ 乙이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평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甲 또는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乙이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부가세별도) 단,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점포개설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乙의 직전 3개월간 甲으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3% X 잔여기간(월) : 상기의 위약금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한다.	제9조의2
甲 또는 甲”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乙는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의3
④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甲의 영업상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는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대략 40~50일]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0~5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가맹금/보증금)	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30일	
최초 상품	- 학원운영에 필요한 교재 등 입고	1~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14일 이내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1일(오픈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정이나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분쟁 해결

<가맹계약서> 제 35 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의 관할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LIST>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최소시간)	비용	비고
원장 교육 (교수부장 "AD" 포함)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과 서비스 마인드 및 실제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초의 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14 일 이내)	최초의 교육은 가맹비에 포함 /이하 실비수준	필수 교육
강사 교육 TTP(Teacher Training Program)	학원의 교수에 필요한 강사에 대한 강의 기술과 내용을 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수시 (미정)	실비수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제품교육, 보수교육, 영업방침의 변경사항 교육, 시정명령에 따른 소집교육 등의 교육(가맹점간담회, 가맹점역량강화, 등 명칭 여하를 불문)	실습교육 집단강의	수시 (미정)	실비수준	필수 교육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일정이나 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훈련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① 효율적인 학원운영과 강사관리 및 교육방법 전수 등을 위하여 乙의 학원의 원장 및 교수부장(이하 “AD”로 하다)은 甲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이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 강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 및 훈련과정은 원장교육, 강사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甲은 제1항의 교육이 실시되는 시간 및 장소, 내용, 乙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등을 정하여 乙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내교육의 경우 교육시행일 7일전, 외국교육의 경우 5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교육비는 갑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숙박비, 부대비용, 기타 강사의 교육비용 등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을의 책임으로 인한 재교육 등은 전액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⑤ 乙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육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학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乙의 요청이 있을 경우, 甲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⑥ 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내·외국인 강사, 기타 일반직원)에 대한 자체 정기 교육(Staff Development)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실시 7일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주강사(내·외국인 강사 중에서 필수교과를 강의하는 자)로 하여금 甲이 이를 실시하는 TTP(Teacher Training Program)과정을 수료하게 하여야 한다. 甲은 TTP(Teacher Training Program)과정 개시 7일전에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학부모세미나를 본사지원으로 할 경우, 1회당 [홈/센터/어학원] 기준으로 20만원/30만원/50만원을 甲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甲과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상기 <교육/훈련 LIST>와 같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가맹계약서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① 효율적인 학원운영과 강사관리 및 교육방법 전수 등을 위하여 乙의 학원의 원장 및 교수부장(이하 “AD”로 하다)은 甲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이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 강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강사 및 직원] ③ 甲은 TTP(Teacher Training Program)과정이나 강사의 면담 결과에 의하여 강사의 수준과 인품 등이 甲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乙에게 강사로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갱신거절 사유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해지]> 계약해지 사유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직영점이 없는 경우)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별첨 1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첨 2 > 구입강제품목

2024년 8월 9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위 표상의 품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맹본부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체제조”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만, 개별적 품목의 경우에는 거래상황에 따라 어떤 품목의 수취여부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수취함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기재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상기와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약속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 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 령 자 주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